의 번 호

1274

【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6. 10. 4.(화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10. 7.(금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10. 25.(화)

2. 제안이유

-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중구의 어르신들이 지역문화예술 활성 화에 기여하고 잠재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,
- 기존 중구함월실버합창단을 중구예술단에 추가 편성하여 문화 도시 종갓집 중구를 대표하는 시니어예술단체로 지원·육성코 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중구함월실버합창단 중구예술단 신규 편성(안 제3조제2항제4호)
 - 현행 : 3개 단체(중구여성합창단, 중구소년소녀합창단, 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)
 - 변경 : 4개 단체(중구여성합창단, 중구소년소녀합창단,

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, 중구함월실버합창단)

○ 단원 등의 선발 및 자격 규정 개정(안 제5조제3항)

- 현행 : 여성합창단 및 심포니오케스트라

- 변경 : 여성합창단, 심포니오케스트라 및 함월실버합창단

4. 관련법령

○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기존 중구함월실버합창단을 중구예술단에 추가 편성하여 문화 도시 종갓집 중구를 대표하는 시니어예술단체로 지원·육성하고 자 개정하는 것임.
- 2016. 8. 29부터 9. 19까지 입법예고 실시(8. 29.~9. 19.)로 주민 의견을 들었으며,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 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됨
- 중구함월실버합창단 신규 편성으로 인한 연간 소요예산액 및 재 원확보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.

〈관계법령〉

□ 문화예술진흥법

- 제3조(시책과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 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 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